

速記界

第 17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3	〈卷頭言〉 한 卷의 冊을 읽고	理事長	崔錫模
5	法院에 있어서의 辯論調書와 速記		梁源龍
12	韓國法廷速記의 展望		編輯部
14	研究：研究委員會活動報告	研究委員長	金永春
20	○ 國會速記士養成所에 對한 考察		金敬萬
29	있을 수 없는 速記		朴一泉
	《體育》		
31	第6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記		宣傳部
34	* 隨筆……葉書草		張僂晉
37	* 詩……矣 三 卍		金銅洙
38	◇ 用語解說		研究委員會
39	第9回 定期總會		總務部
42	會務報告		總務部
11	速記料金案內		
13	速記料稅率		
19	第10, 11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合格者名單		
28	나의 所願		
30	速記에 關한 相談을 받습니다		
33	原稿募集		
44	編輯後記		



한권의 冊을 읽고

~任期를 마치면서~

理事長 崔 錫 模

그 책의 첫 장을 펼칠 때 순진한 마음에 好奇心, 恐怖感, 責任感 등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1페이지의 理事陣構成에 있어서는 서로 마다하고 사양하는 분들을 파장된 表現으로 三願草盧의 禮를 갖추어 老中靑의 三色으로 모시기가지는 多少 隘路點이 있었으나 그 후의 일들은 比較的 순탄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의 첫번 째는 冬季練習은 치밀한 計劃하에서 정신없이 뛰다보니 결과는 平年작을 거두어 무난히 大行事務치무면서 自信을 갖게되어 그것을 經驗으로 그 이후 세번의 練習을 무사히 마칠은 多幸으로 생각됩니다.

對外弘報를 겸한 技能檢定도 獨自의이긴 하지만 아무 失策없이 어느 國家機關의 試驗 못지 않게 公明正大하게 네번에 걸쳐 成功裡에 그 實을 거둬는 協會의 發展을 위한 하나하나의 礎石이 되어지고 있으며 會誌 역시도 原稿蒐集의 隘路는 있지만 꾸준히 質的 向上을 꾀하면서 그 命脈이 유지되고 있으니 훗날 「速記界」야말로 진정한 速記史가 되리라고 確信할때 더 많은 會員들의 보다 많은 利用이 있어

야 할 것으로 思料합니다.

책의 中間部分의 體育大會 페이지는 깊은 印象을 남기고 있습니다. 韓國體育人の 搖籃인 泰陵選手村 運動場을 메아리친 總力安保賑起大會와 防衛誠金 10萬元 輸出에 이어 가진 蹴求大會는 그 入場式부터 全國速記人の 團結力을 파시한 赤靑白黃草綠色이 꼭 갖추어진 유니폼의 무리들이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하던 모습이며, 今年엔 정성들어 가꾼 잔디위에서의 白球의 震雲과 二世들의 재통엔 競技를 바라보노라니 “저들이 우리나라엔 우린 살아 있을까” 하고 새삼 늙어간다는 것을 느꼈을 때 生의 虛無마저 느껴 보았습니다.

두터운 冊도 다 읽어 갑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基金을 造成하여 會의 發展에 보탬을 주고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事業을 하지 않고 날짜란 채은 印象이기에 옳고 그름의 判斷은 보는 이의 觀點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긴 읽을거리 없이 건너 뛰었습니다.

法院에서 速記士 얘기가 나오고 實務者도 만나보고 하는 동안 多少의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10名의 食口가 10年이상 살던 집을 떠나 새생시生活을 누리게 될은 速記 30年史의 한 페이지를 참관하게

記錄할 것인바 오직 그들의 앞날에 榮光이 있을진저!

理事長의 資格으로 글을 쓰는 것도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알고 끝맺음에 즈음하여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나 個人보다 協會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였는가?

나보다 會員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奉仕하였는가?

맡겨진 일에 대하여 所信껏 活動하였는가? 스스로 돌이켜 봅니다. 反省도 해봅

니다. 아프고 쓰라렸던 히말라야에의 再挑戰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지난날을 후회합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時間의 遊戲안에 무엇이랴 辯明하겠습니까?

會員 여러분과 理事陣의 協調로 所任을 마치고 그 功過는 훗날 매겨지겠지만 速記史에 一點을 남기고 2年이나 걸려 읽은 730페이지에 達하는 두터운 책의 뚜껑을 닫습니다.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의 發展을 빌려서.....

總力安保를 爲한 우리의 決意

最近의 印度支那와 北傀의 南侵挑發策으로 事實上의 戰爭狀態인 現局面에 處하여 우리의 決意를 다음과 같이 闡名한다.

1. 國家와 民族을 危難으로부터 守護할 길을 提示하신 朴大統領閣下의 4·29特別談話를 全幅 支持 實踐한다.

2. 國家安保를 沮害하는 一切의 國論分裂行爲를 단호히 排擊하고 國民總和團結을 爲하여 모든 努力을 傾注한다.

3. 記錄報國의 使命을 完遂하기 爲하여 우리 速記人은 말은바 職務에 더욱 忠實한다.

〈註：本決議文은 全國速記人安保驅起大會에서 採擇되었음〉

法院에 있어서의

辯論調書와 速記



梁 源 龍

(서울高等法院刑事課)

<目 次>

- | | |
|---------------|------------|
| 1. 序 | 4. 必要性 |
| 2. 辯論調書 | 5. 缺 點 |
| 3. 沿 革 | 6. 節 次 |
| ① 費用問題 | 7. 速記者의 義務 |
| ② 能熟한 速記者의 不足 | 8. 速記錄의 訂正 |
| ③ 準備書面 | 9. 速記錄의 廢棄 |
| ④ 要旨主義 | 10. 費用問題 |
| ⑤ 宣誓明文 | 11. 尾 |

1. 序

法院行政處의 割愛要請에 依해 國會速記士 10名이 1976年 9月 20日字로 在京各級法院(서울高法: 梁源龍, 金鍾壽, 서울民事地法: 河大煥, 崔龍夏, 楊澈在, 鄭明吉, 서울刑事地法: 金謙善, 林來炫, 徐吉泉, 高太仲)에 轉補되어 裁判速記를 擔任케됨으로써 새로 開拓된 分野에서의 裁判速記의 法律의 性格問題가 擡頭되었다.

現行 民·刑事訴訟法上 그 具體的인 指示가 없기 때문에 法院當局에서도 現實의 으로 촉박된 研究課題로 되어 大法院裁判研究官 朴英植判事가 이 分野의 첫 研究講義한 內容을 간추려 다음에 記述하러

한다.

다만 大法院司法練修院의 速記主事를 위한 法院職員 第1期實務班教育(1976. 9. 20~9. 28)에서 行한 이 講義內容이 完整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다 新중하게 研究補完되어지리라는 것을 前提한다.

2. 辯論調書

調書라함은 訴訟節次進行에 關하여 事實이 施行되었는가를 公證하는 書記가 作成하는 書面이며 또한 期日(재판)에 무엇이 施行되었는가를 報告하는 文書이기도 하다. 法院書記는 하나의 公證機關인 것이며 그가 作成하는 調書는 一定한 法律의 效果가 있고 調書에 記載되어 있는 어

면 부분은 節次가 公正히 施行되었다는 것을 擔保하며 公證力이라는 訴訟法上 特別한 效果가 賦與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法定證據力이라고도 한다.

公證力있는 事項以外의 記載事項에 關하여는 報告文書로서의 證明力이 있는 것이다. 訴訟節次는 期日을 中心하여 展開되는 것이며 期日에 있어서의 모든 節次가 公正히 施行되게 하기 위하여 審判機關과 더불어 公證機關인 書記가 參與하는 것이며 參與한 書記는 調書를 作成한 義務가 있는 것이다.

現行法上 參與書記의 調書에 關한 規定을 보면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準備節次調書, 證人 訊問調書, 鑑定調書, 檢證調書, 和解調書등에는 期日마다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被告人·被疑者·證人·鑑定人·通譯人등의 訊問調書와 檢證·押收·搜索등 調書와 公判調書가 있다.

家事審判에 있어서는 調停調書, 審判調書등이 있다.

以上列擧한 外에도 行政訴訟·競賣法등에 調書를 作成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判決節次는 原則으로 반드시 辯論을 經유하여 또 辯論에 提出된 訴訟資料만을 判決의 基礎로써 採用하여야 한다(民訴 124條).

辯論의 經過에 關하여서는 法院書記가 期日(재판)마다 調書를 작성하여 訴訟記錄에 編綴하여야 한다(民訴 141條).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辯論의 全部나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사용하

여 錄取할 수 있다. (民訴 148條 1)

被告人, 證人 또는 其他者의 訊問에 있어서 法院이 必要한 때에 問答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刑訴 56條 2).

이 速記錄과 錄音帶는 調書의 一部로 한다. 다만 法院은 當事者의 合意에 依하여 이를 廢棄할 수 있다(民訴 148條 2)

라고만 規定하고 있어 現行法上으로는 速記를 아주 消極的으로만 採擇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裁判業務의 近代化作業에 따라 보다 完備한 辯論調書作成으로서 當事者의 陳述內容이 충분히 顯出되어 迅速·正確한 判決이 이루어짐으로써 단 한사람의 역을하고 不公正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沿革

재판過程에 速記를 導入한 나라로서는 「오스트리아」인바 1895年 「오스트리아」民事訴訟法 第280條는 「모든 證據調査에 있어 速記를 利用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여 재판의 近代化를 試圖한 첫 케이스이다.

1924年 獨逸聯邦國 民事訴訟法도 그 第163條의 A에서 速記制度를 導入했으며 日本도 大正 15年 日本의 民事訴訟法改正時에 처음으로 導入했으며 昭和 32년에는 裁判速記法이란 法을 制定하기에 이르렀고 同法에서 速記官制를 두었다.

한편 昭和 35年 日本은 民刑事訴訟規則을 改正하면서 위 裁判速記法の 未備點을 具體的으로 補完하였다. 이때 日本도 처음으로 速記와 더불어 近代電子文明의 產아인 錄音裝置를 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5年 日本의 古物을 받아들여 固有의 訴訟法은 創出되지 않았지만 民訴 148條와 刑訴 56條에 速記와 더불어 錄音裝置를 日本보다 먼저 規定한 것은 進一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規定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裁判過程에 있어서 速記利用率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 主된 原因을 分析해 보면

① 費用問題

高度의 技術과 長時間 翻文所要時間 때문에 時間當 25,000원의 速記料가 比較的 訴訟當事者에 負擔스러운 價額인 경우가 있어 이 費用問題 때문에 애당초부터 速記의 利用을 엄두도 못내는 實情이었다. 그동안 訴訟物價額이 高額인 民事의 경우와 政治的 巨物의 刑事事件에만 速記가 利用되었을 뿐이다.

② 能熟한 速記者의 不足

裁判速記는 高度의 技術과 持久力과 正確·迅速·公正을 要한다. 訴訟當事者(被告, 原告)나 證人, 參考人, 鑑定人 既問에 있어 裁判長(또는 陪席判事), 辯護人(原, 被告各側), 또는 檢事의 逼박치는 一問一答式의 訊問型에 速記者는 숨 실틈도 없이 두세時間 어떤 경우는 6時間동안을 불꽃을 뿜어야 한다. 오른팔이 거의 痲痺되고 精神的으로는 卒倒一步直前이다. 그러나 記錄 하나하나가 當事者들에게는 身體的 그리고 物質的 痛楚에 直結된 것이므로 그 速記함에 있어서 한자라도 빠뜨릴 수 없는 高度의 技術이 要求되고 交代도 있을 수 없는 長時間의 외롭고 괴로운 速記에 勸耐할 수 있는 體力과 忍耐力이 切實히 要求되며 따라서 長時間速記의 病弊인 自暴自棄式速記로 자칫 빠지기 쉬

은 心性에서 高度의 正確性이 要求되는 것이 裁判速記者의 必要的 資質이다. 이렇게 定義했을 때 法院의 決定이나 辯護人의 要請으로 과연 재판속기하려 할 때 그 能熟한 速記者의 코빙이 무척 어려운 實情에 있었다는 것이 當務者들의 共通된 얘기다. 지금까지 確認된 것에 依하면 그동안 裁判速記에 단골로 초빙될 정도의 速記者는 5명內外인 것 같다. 앞으로 초빙케이스의 裁判速記者는 民·刑事訴訟法을 반드시 읽어두어야 할 것이고 公判圖書作成要領을 體得해두면 錦上添花라 하겠다. 이 要領을 알고 들어가면 그 記錄에 있어 철썬 能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準備書面

民事의 경우 大部分의 재판과정은 原告의 攻擊에 대해 被告의 防禦가 公判廷에서의 辯論을 통한 것이 아니고 主로 書面을 통해 「××을 返還하라」 攻擊하고 「××을 返還할 理由없다」하고 防禦하는 準備書面으로 對置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로 사실상 速記가 必要하다는 얘기가 된다.

④ 要旨主義

現行法은 辯論의 外部的 經過의 記載事項인 ㄱ. 本案判決의 申請 ㄴ. 移送의 申請 ㄷ. 法官 또는 書記의 除斥 또는 忌避의 申請 ㄹ. 擔保供與의 申請 ㅁ. 訴의 變更이 不合法하다고 하는 主張 ㅂ. 攻擊 또는 防禦方法이 時期에 늦은 것이라는 主張 ㅅ. 準備節次의 結果 또는 從前辯論의 結果 辯論에의 上程 ㅇ. 期日의 延期 또는 續行 責問權拋棄등은 반드시 記載해야 하지만 辯論의 內容은 速記式으로 그 內容全部를 記錄치 않고 辯論의 外部的經

過의 要旨만 記載해도 無妨하게 되어 있어 事實上 速記의 必要性이 實務面에서 排除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實務例로서는 速記者가 速記를 했다하더라도 그 速記錄은 다만 參考資料로 訴訟記錄綴에 添附했을 뿐이었다.

⑤ 宣誓明文

現行訴訟法上 초빙速記의 경우 다른 證人이나 鑑定人처럼 「法廷에서 速記함에 있어서 虛偽記錄을 하지 않겠다」는 宣誓義務가 規定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翻文된 速記錄에 대해 어느만큼의 公證力 立證力이 있겠느냐가 문제되고 있다. 法院當局이 錄音같은 것으로 일일이 對照過程을 거치지 않는 이상 訴訟當事者間에 重大한 利害關係가 얽히는 그 速記錄內容을 어느만큼 또 어떤 方法으로 受認하겠느냐이다結局 參與書記의 간단한 「메모」는 설혹 잘못 記載되었더라도 決定的인 調書로서 裁判長도 그 修正을 命할수 없는 強力한 公證力이 있는데 反해 裁判全貌를 완벽하게 기록한 速記錄은 그 參考資料에 不遇해 왔다는에서 速記의 利用이 消極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法院職員으로서의 速記일 경우는 그 速記錄自體가 公判調書가 될은 當然한 일이다.

4. 必要性

裁判過程에 速記가 必要함은 너무도 當然한 現實이다. 物質文明의 急速한 發達과 더불어 裁判內容도 날로 複雜多樣하게 됨으로서 옛날과 같이 간단한 要旨主義로서는 재판의 迅速·正確·公正을 期할 수 없음은 不問可知이다.

특히 訴訟法的인 側面에서 볼 때 一問一答式的 交互訊問制度下에서는 速記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內容을 忠實히 記錄할 수 없다.

더더구나 書類審을 爲主로 하는 大法院의 上告審의 경우 그 判決의 基礎를 1審, 2審의 公判調書에 두는데 그 公判調書가 當事者들에 극히 不安한 要旨主義에 입각한 調書이고 보면 여기에서 速記의 必要性은 自明해지고 만다.

5. 缺點

위와같이 그 必要性이 強調되면서도 實務面에서 사실상 다음과 같은 缺點을 發見할 수 있다.

① 正確度의 保障이 없다.

이는 法律的 素養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성과 騷亂한 法廷에서 혼자서 3時間 내지 4時間씩의 長時間 記錄의 경우 身體的으로 犯하기 쉬운 오류의 可能性을 뜻한다.

이 경우 參與書記의 老練한 要旨主義의 간단한 「메모」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② 作成과 閱讀에 時間이 걸린다.

參與書記의 「메모」는 「메모」 그것으로서 끝나지만 速記일 경우는 翻文하는데 많은 時間이 所要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作成된 速記錄을 閱讀하는데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事件을 迅速히 處理해야 할 裁判部로서는 많은 時間을 費하게 된다.

③ 單調롭다.

參與書記 「메모」가 重點의 事件의 核心을 파헤쳐 그것을 強調하는 調書의 性格을 띄는데 比해 速記는 一問一答 그대로

寫實化했기 때문에 小說的이고 單調롭다
는 것이다.

6. 節 次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辯論의 全部나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사용하여 錄取할 수 있다。」(民訴 148條 1)

「被告人, 證人 또는 其他者의 訊問에 있어서 法院이 必要한 때에 問答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刑訴 56條 2)

라고 하여 「速記에 부치기로 한다」는 法院決定이 내려지는데는 첫째 法院職權으로 하는 경우와 訴訟當事者의 어느 一方이나 또는 合意에 依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法院은 特定한 辯論期日을 指定하고 또한 全過程을 速記시키거나 아니면 미리 速記시키고자 하는 範圍를 定해서 決定한다. 따라서 어느 特定의 速記者 選任決定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초빙 速記의 경우).

한편 速記者도 法官과 마찬가지로 除斥 忌避, 回避制度가 適用된다고 본다. 具體的으로 特定한 事件에 대하여 特殊한 關係가 있는 경우 裁判의 公正, 信用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特定速記者를 초빙하기로 選任決定한데 대해 만일 그 速記者가 不出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때의 速記者는 반드시 그 초빙에 應해야 할 義務는 없다 하겠지만 한번 應했으면 그 다음 期日에도 반드시 應해야 된다고 解釋한다 即 任意로 速記를 拒否하거나 辭任할 수 없다.

또한 法院은 速記者가 不出席했을 때는 召喚狀을 發付할 수 있다.

이와같은 초빙 速記는 法院決定形式으로 速記를 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訴訟指揮에 關한 節次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決定은 언제든지 自由自在로 取消·變更할 수 있다(208條).

또한 法院은 決定으로 速記의 一部를 省略하거나 一部를 停止할 수 있다.

7. 速記者의 義務

速記者는 速記原本과 速記錄을 作成할 義務가 있다.

速記者는 現行規定에 宣誓義務가 없으므로 宣誓를 안해도 무방하다. 他國例로는 「오스트리아」 法院은 速記者에게 宣誓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速記者는 自己가 느끼고 들리는대로 速記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甲이라고 들었다 해도 速記者가 乙로 들었으면 乙로 기록한다.

速記者는 速記할 때 있어서 主觀的인 것이 들어가도 안되며 主觀的인 解釋을 해서도 안된다. 速記는 言語에 依한 表現의 記錄이므로 行動에 依한 表現은 記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팔호를 열고 「被告人이 손을 흔들며」等 行動의 狀態를 說明할 必要는 없다(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서 筆者가 구체적으로 팔호가 必要한 경우를 說明하였는바 朴判事도 이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였음을 附記함).

速記한 原文은 當該期日(재판)이 終了된 後 지체없이(보통 3日 이내) 翻文하여 速記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48시간內, 西獨: 지체없이)

速記原本은 調書의 一部가 될수 없고

速記錄이 調書의 一部가 된다.

또한 速記者에게 開示義務가 있다. 즉, 速記原本이건 速記錄이건 當事者의 要求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開示할 義務가 있다.

그러므로 速記者는 速記原本(錄)朗讀請求, 速記原本(錄)閱覽請求, 速記錄謄本請求, 速記錄抄本請求에 應한 義務가 있다.

速記原文保存期間에 대한 明文은 없으나 上告審이 끝날 期間까지는 保存함이 妥當하다고 본다.

8. 速記錄의 訂正

參與書記가 作成한 公判調書에 대하여 調書認證權者인 裁判長이 調書의 一部 訂正을 命할 수 있는데 대하여 速記錄의 訂正도 命할 수 있겠는가 하는 點이다.

參與書記의 法廷錄(메모)이 要旨主義인 데 대하여 速記錄은 全文主義로서 그 主觀的인 것을 排除하고 있으므로 速記錄의 訂正은 命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參與書記가 速記錄의 謄本點을 發見했다 하더라도 이의 訂正을 할 수 없고 다만 그의 調書에 謄本部分이 있음을 記載하면 될 것이다.

參與書記는 辯論調書必要的 記載事項에 반해서 速記에 부친다고 記載해야 한다.

民訴 148條 2項에 依하여 廢棄된 速記錄이라 할지라도 그 速記錄은 訴訟記錄에 添附해야 한다.

9. 速記錄의 廢棄

「이 速記錄과 錄音帶는 調書의 一部로 한다. 다만 法院은 當事者의 合意의 依하여 이를 廢棄할 수 있다」(民訴148條 2項)라고 하여 訴訟當事者間에 合意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미 만들어진 速記錄도 廢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民事訴訟에서만 있는 일로서 當事者가 訴訟을 매나감에 있어 서로 利益이 될 경우 廢棄에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當事者의 合意이지 法院職權으로는 廢棄할 수 없다.

다만 廢棄의 時期에 관해서는 規定이 없으므로 아직 速記하지 안했으면 免除될 것이고 이미 했다면 廢棄되지만 일단 調書의 一部로 速記錄이 完成된 후 當事者가 이를 廢棄하기로 合意했을 경우 이를 法院職權으로 當然히 廢棄할 것이나 아니면 當事者의 抗辯, 異議를 받아들여서 할 것이나 하는 異見이 있으나 職權으로 廢棄할 수 있다는 見解가 通說이다.

또한 當事者가 合意하면 이미 廢棄키로 合意한 것을 다시 取消할 수 있다. 이는 辯論終結前까지는 언제든지 可能하다고 보아야 한다.

10. 費用問題

速記料도 訴訟費用으로 보는 一般의 解釋論에 立却 모든 訴訟費用은 當事者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現行 民事訴訟費用法에 따라 당연히 敗訴者가 負擔해야 할 것이다. (「오스브리야」: 速記를 申請한 쪽이 負擔)

그러므로 설혹 作成된 速記錄이 廢棄가 되더라도 그 費用은 敗訴者가 負擔해야 한다.

한편 速記錄의 謄本이나 抄本の 請求費用은 당연히 請求者가 그 實費를 負擔할 일이다.

11. 尾

지금까지 法院에서 速記行爲가 이루어질 경우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冰山의 一角을 다룬데 불과하다. 우리의 地位問題라든가 參與書記와의 問題라든가는 論外로 하였다. 언제인가는 이런 問題들이 당연히 다루어지리라 믿는다.

다만 우리들이 法院으로 옮겨온 후 1個月 동안에 筆者의 경우 30餘事件에 參與하였는바 우리들이 해낸 일이 法院高位當局者들에게나 實務參與書記들에게 速記의

必要性을 實感케 하고 있음을 自負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當然한 順理이기 때문이다. 裁判長도 辯護人도 被告人도 檢察도 모두 裁判庭 雰圍氣가 速記士의 불꽃 튀는 불펜끝을 注視하면서 그들도 熱心히 熟면 主張을 하기 때문이다.

1審에서 死刑을 宣告받은 어느 젊은 사형수가 2審公判庭에서 最後陳述의 순간, 速記者와 눈이 마주쳤다. 일순 그는 눈에 빛발을 세우는듯 하더니 速記「노우트」를 向하여 마치 遺言이나 남기는 것처럼 또박 또박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速記料金案內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20,000원	주주총회
좌 담 회	"	23,000원	세미나 등
재 판 속 기	"	25,000원	
방 송 속 기	"	23,000원	
녹 음 재 생	"	25,000원	
구 술	"	15,000원	저술, 비서속기등
외 국 어	"	50,000원	영어, 일어

- 단, 1. 요지작성료는 속기료 외에 매시간당 10,000원씩 가산함.
 2. 긴급번역료는 속기료 외에 매시간당 10,000원씩 가산함.
 3.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함.

위 와 같 이 결 정 시 행 함.

1975년 7월 1일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韓國法廷速記의 展望

編 輯 部

注: 韓國速記界의 오랜 宿願이었던 法院에 있어서의 裁判速記가 이루어졌다. 法院行政處는 今年에 主事級 速記士 T/O 37名을 策定하고 第1次로 10名을 韓國速記士의 本產인 國會事務處에 割愛要請, 지난 9月20日을 期하여 實務經歷 10年以上의 「비대량」級 速記士 10名이 法院으로 轉出하여 서울高法 2名, 서울民事地法 4名, 서울刑事地法 4名이 勤務케 됨으로써 근게 닫혔던 裁判速記의 門이 열리고 行政, 立法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法을 執行하는 司法에 까지 速記士의 役割이 擴大되고 汎國家의 貢獻을 하게 되었다는 使命感과 矜持를 갖게 되었다. 此際에 全速記人들은 後鑿養成問題에 있어서나 資質向上面에 있어서 더욱 研究 努力하고 奮發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난 9月 28日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의 法院現況報告過程에 있었던 實談應答內容을 本編輯部記者가 傍聽席에서 直接 速記로써 取材하여 反文 法廷速記에 關한 部分만을 여기에 紹介하며 우리나라 法廷速記의 展望에 對해서 占쳐 보기로 한다. (在資編輯部)

○ 金命潤委員

現在 速記士가 10名이 配置된 것은 아는데 77년에는 몇 명이 됩니까?

○ 法院行政處企劃擔當官 兩基正

37名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命潤委員

37名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 法院行政處企劃擔當官 兩基正

우선 年次計劃으로서 81년까지 充員豫定입니다.

○ 李宅教委員

速記制度에 關한 것인데 速記制度가 現在 10名이 確保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 5個年計劃으로 해 가지고 한 300餘名의 速記士를 養成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구태어 그렇게 5個年計劃으로 나누어서 實施할 理由가 무엇

인가? 또 이것을 短縮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速記制度는 法院으로서의 速記化는 本委員이 每年 主張을 하고 바라고 한 것입니다마는 과히 그렇게 많은 費用이 드는 것도 아니고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손쉽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速記制度가 주는 信賴 그것은 速記制度를 法院에 導入하는 것 以上 몇 배의 實效가 있는 것이니까 되도록 이것을 短縮할 수는 없느냐? 短縮하는 데 대한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隘路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法院行政處長 金炳華

李宅教委員께서 言及하신 速記制度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率直히 말씀드리어서 이 速記制度의 採用은 李委員에서 本委員會席上에서 누차 強調한 것이 그것이 反映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좋은 意見말씀을 하셔서 感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더 短時日안에 이것을 實踐한 方法이 없는가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豫算面이나 人員面에서 그렇게 不足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現在 策定人員으로서 381名으로 策定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現在에 國會에서 오랫동안 訓練을 받은 速記士 열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보내 주셔서 感謝하게 생각하고 저희 法院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期待가

크고 이분들이 우선은 試驗段階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活用하는 데 있어서 가장 法院이 效率的이고도 必要한 結果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短時日內에 모든 것을 處理할 때에 빨리 採用을 해서 速記制度를 法院에 導入함으로 인해서 裁判事務의 公正等を 期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短時日內에 3百數拾名이라고 하는 人員을 補充하기가 至極히 어렵다는 얘기고 國會와의 協調를 얻어서, 이것은 우선 이 사람들이 現段階에 있어서 저희들 法院에서 試驗段階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結果를 봐서 短縮해서 處理를 하겠습니다.

(끝)

速記料稅率

註: 會員여러분들의 便宜를 위해 速記料에 대한 稅法關係條項을 紹介한다.

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는 現行所得稅法 第 144條 (一般源泉徵收稅率) 第 3號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由職業에서 發生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1로 한다」로 되어있어 自由職業의 源泉徵收率을 1%로 規定되었으며 所得稅法施行令 第 38條 (自由職業의 範圍) 第 11號에는 「고정·변역·고종·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條項이 있어 速記가 自由職業임을 明文化하고 있다. 그 以外 一定率의 防衛稅와 所得割住民稅가 若干 加算된다.

研究委員會 活動報告

—短期講習用速記法式創案에 대하여—

研究委員長 金 永 春

1. 序 論
2. 研究課題
3. 短期講習用法式
 - (1) 創案過程
 - (2) 文字構成
 - (3) 特色과 問題點
 - (4) 法則과 略法
4. 結 論

1. 序 論

本人이 大韓速記協會 研究委員長이라는 중차대한 職責을 맡고 事實 그 任期동안에 뚜렷한 業績을 남기지 못하고 그 任기를 마치게 되니 會員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禁할 길이 없다.

다만 여러가지 制約된 환경속에서 내내로는 무엇인가 달겨진 任務를 하나라도 충실히 해서 어떤 結果를 남기려 했었다는 意慾의 痕迹만을 남기고 後任者에게 前任者의 立場에서 몇가지 問題點과 研究委員會의 活動範圍와 그 課題를 넘겨 주면서 그 結實을 期待하는 것으로 나의 滿足을 삼고 協會發展에 徒전을 더욱 마련해 주는 길잡이가 되려고 한다.

2. 研究課題

協會로부터 研究委員會에 주어진 研究

事業에는 ① 既存速記法式의 改良發展에 關한 事項

② 速記學 研究에 關한 事項

③ 機械速記 研究에 關한 事項

④ 速記術向上 및 速記業務改善에 關한 事項

⑤ 其他事項 等이다

研究委員會에 주어진 以上の 事業들의 問題點을 하나 하나 檢討해 보려고 한다.

첫째, 既存速記法式의 改良發展에 關한 事項에 있어서는 現在 一般的으로 活用되고 있는 既存速記法式을 改良한다고 해서 그것이 現職速記士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지 못한 反應이 나올 것이라 보았고 더구나 既存法式에는 數多한 法式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法式만을 指摘하여 改良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事實上 研究委員會로서는 冬季 夏季에 實施하는 協會事業의 하나인 短期講習用 速記法式을 創案하자는데 그 主眼點을 두기로 하여 이 事業을 着手하게 되었던 것이다.

本 事業에 關한 過程說明은 뒤에 하기로 한다.

둘째, 速記學 研究에 關한 事項에 있어서는 이 事業自體가 너무 範圍가 넓고 事實 曖昧한 點도 없지않을 뿐만 아니라 또

研究委員會에 주어진 事業 하나를 完成하려 해도 그것이 많은 時間과 豫算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本 事業은 좀더 研究檢討를 거쳐 年次事業으로 하기로 하여 뒤로 미루어졌던 것이다.

세째, 機械速記 研究에 關한 事項에서는 모두가 關心을 가지고 일단은 해 볼만한 事業으로 指目하여 委員長 自身이 數次 研究도 했고 資料蒐集을 하려고 圖書館을 찾고 外國의 速記機械를 視察하기도 하여 그것을 우리 速記에 알맞도록 轉換할 수 있는 方法이 없겠느냐 해서 勞心焦思였으나 機械工學에 대한 知識의 限界를 느꼈을 뿐 큰 進展은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이 事業에 대한 意慾은 식을 수 없으며 우선 1次事業으로 着手키로 한 短期講習用 速記法식의 創案이 完了되면 2次事業으로 기필코 繼續研究하여 機械速記의 한 「모델」을 完成하여야 되겠다는 미련을 남겨둔 것이다.

네째, 速記術向上 및 速記業務改善에 關한 事項에 있어서는 現職速記士들의 速記業務遂行에 있어서 어떤 改善點이 있는가에 主眼을 두고 業務處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事業을 찾아 보았다. 그 結果 速記業務遂行에 어려움을 주는 소위 專門用語를 蒐集하여 그것을 會員들에게 周知시킴으로써 業務遂行에 圓滑을 期하러 本會誌인 速記界에 用語解說欄을 두어 每號마다 실었으며 研究委員會 獨自의 專門用語集을 發刊할 計劃을 가지고 계속 用語蒐集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研究委員會 事業內容과 그 活動報告를 간단히 마치고 研究委員會 1次 事業活動分野인 短期講習用速記法식의 研

究過程과 그 結果에 대한 報告를 하고자 한다.

3. 短期講習用法式

(1) 創案過程

이 事業은 當初 既存速記法式을 改良한다는 研究委員會 事業 1項의 趣旨를 살려 始作하려 했으나 現職速記人들로 構成된 研究委員會들의 主觀的인 見解는 도저히 各 委員들 自身이 習得하고 있는 法式을 排除할만한 어떤 獨特한 案을 創出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 事業은 協會에서 實施하는 放學을 利用한 短期講習用法式을 創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事業은 前任 研究委員長때 부터 着手하여 數次에 걸친 研究委員會會議과 研究 討論 整理를 거쳐 한 試案을 作成하게 된 것이다.

現在 研究委員會에서 作成해 놓은 소위 假稱 研究委員會法式이 創案되기 前 1次的으로는 解放當時 엄정주씨라는 분이 創案發表했던 한글식 速記法을 國立圖書館에서 前任 研究委員長이 찾아내서 그 案을 바탕으로 하여 數次에 걸친 研究討議結果 速度를 要하는 速記文字로서는 實用性이 稀薄하다는 結論이 나왔던 것이다.

文字의 構成은 한글의 子音을 模倣하여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理解하기는 쉬우나 速記文字로 連結시키려 할 때에는 文字構成上 도저히 連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構成形式이 速記文字로서의 價値가 없었기에 이를 廢棄해 버렸고 當初 그러한 原因으로 해서 그 法式은 헛별을 못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그리하여 現在 研究委員會法式인 試案

“ㅁ” “값” →
 “ㅁ, ㅂ” “값, 값” →

등으로 하여 以上과 같은 資料를 根據로 1次試案을 完成하고 當時 夏季無料講習에서 講義했던바 既存法式을 講義했을때 보다는 受講生들의 理解度나 解讀力이 훨씬 效果의이었던 것이다.

勿論 이 以外에도 言語構成上 必要한 助詞라든지 接續詞, 形容詞, 副詞등을 약간 加味해서 講義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研究委員會로서는 이 1次試案에 滿足치 않고 더욱더 研究에 研究를 거듭하여 보다 優秀한 法式을 創案코자 研究過程에서나 講義중에 나타나는 諸問題點들이나 혹은 平常時에도 各 委員들이 細心한 注意力을 기울여 檢討한 結果 나타나는 問題點들을 補充하고 改善 修正하기 위하여 數次에 걸친 研究委員會를 開議하여 討議를 가졌던 것이다.

이 討議過程에서 抽出된 結論은 基本文字의 字數를 縮小하기 보다는 오히려 擴大시켜서 基本文字를 完全히 暗記로 두는 것이 오히려 一旦 記錄해 놓은 速記文字를 理解하기가 容易하리라는 判斷에서 字數를 늘리기로 決議를 보았으며 이에 대한 作業 역시 많은 時間을 消費했었다.

(3) 特色과 問題點

但, 이 案에서의 特色은 “ㄴ”과 “ㄹ”를 같은 型의 文字로 構成해 놓았다는 點이다. 그 理由는 “ㄴ”과 “ㄹ”라고 하는 전혀 다른 發音上의 文字를 同型文字로 表示해 놓았을 경우, 理解에 있어서는 混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結論을 얻었던 것이다. 例를 들면 “고기”라는 速記文字를 記錄해 놓았을 경우 그것을 前後文章으로 미루어 “그기”라고는 理解되지 않

을 것이며 “그림”을 “고림”으로는 理解하지 않을 것이라는 結論을 얻어서 그렇게 變更시켜 놓았던 것이다.

勿論 여기에도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한 問題點들을 意識하면서 다시 放學을 利用한 講習에 適用시켰던바 前記한 異音同型文字에 대해서 약간 難解하다는 뜻을 表하는 受講生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大多數 受講生들은 理解에 어려움이 없다는 意見을 나타내었다. 이런 點들로 미루어 볼때 速記文字라고 하는 것은 누가 創案한다고 하더라도 完全無缺하고 萬人이 滿足할 만한 것을 創案할 수는 없는 것이며 修正과 補充은 尙상 따라다녀야 될 性質의 것이라고 볼 때 本 事業을 始作한지 日淺한 研究委員會로서는 이에 滿足치 않고 더욱 研究事業에 精進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 結果 研究委員會式이라고 할 수 있는 案을 創案해 있으며 이 完成된 案을 두고 4, 5년에 걸쳐 數次的 講義中 드러난 短點과 重複된 點 修正 補充이 必要한 部分을 整理해서 내놓은 案인 것이다.

이 案에서의 特色은 그간의 經驗을 통해서 얻은 結論으로써 短期講習用速記文字에 있어서는 類似한 音의 母音은 字形을 類似하게 構成시켜서 類似한 文字는 記錄上 약간의 錯誤가 있다 하더라도 理解와 解讀에는 支障이 없도록 한 點이다.

例를 들면 “ㄱ”과 “ㄴ”이 그 예이며 이 文字의 構成은 文字의 길이는 같게 했고 字尾에 圓을 붙이되 “ㄱ”은 약간 大圓을 “ㄴ”은 小圓을 붙이도록 했다.

그래서 記錄하는 過程에서 大圓이 小圓이 되고 小圓이 大圓이 되었다고 해서 全혀 理解와 解讀이 되지않는 것은 아니다.

委員 各者 各者가 맡은 바 任務를 다하기 위해서 眞摯한 研究와 그 研究에 대한 個人發表와 個人發表에 대한 討論을 거쳐 어떤때는 主觀的인 見解를 讓步하지 않아서 激論을 벌리는등 한가지의 問題點을 두고 數時間을 論議하고 해서 어떤 한 結論을 내는, 難産에 難産을 거듭해야 했던 일이 非一非再였었던 것이다.

어떻게 盡善盡美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研究委員會 나름대로 한 式을 創案한데 대해서는 自負心을 갖고 싶다.

現在 研究委員會가 保管하고 있는 案은 그 自體가 앞으로 많은 修正과 補完이 必要하리라고 믿으며 그 作業을 後任研究委員會에 넘겨 좀더 完全한 案이 되기를 眞心으로 期待하면서 지금까지의 研究委員 여러분들의 勞苦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제10, 11회 국어 영어 速記士資格檢定試驗

日 時: 1976. 4. 25(10회) 1976. 10. 31(11회)

場 所: 國會速記士養成所 國會速記擔當官室

— 合格者名單 —

▲ 제 10 회 國語速記

- 1級 윤희덕 이경식 전성인 김주성 최길주 박경석 김춘원 안순희(計 8名)
- 2級 강수현(計 1名)
- 7級 황복순 김강미 문금희 박연자 하규섭 이기일 정영재(計 7名)

英語速記

- 6級 허영순 박인덕 설영숙 김영신(計 4名)
- 7級 이재천 박성숙 김덕상(計 3名)

▲ 제 11 회 國語速記

- 1級 박기만 김화자 박영수 강수현 박지명 이주성 박미향(計 7名)
- 3級 황복순 문금희(計 2名)
- 4級 유인구 이기일 박연자 박인혜(計 4名)
- 5級 이재선 전향숙 박경희 최경희 유정옥 최희남 이학수 양진숙 김진설 윤상운 김형수 김재성 우정순 김희자 전난영 정보영 이정희 심순옥 이승희 지화일 장순입 조영기 오동범 윤영수 이영화 유영호 이소정 고영원(計 29名)
- 6級 박상목 송문길 정상철 이화연 엄정진(計 5名)
- 7級 신명식 김원주 박명희 윤정숙 이영재 신용옥 이혜경 박영선(計 8名)

英語速記

- 7級 최미숙(計 1名)
- 8級 차경애 윤현숙 김성숙(計 3名)

國會速記士養成所에 對한 考察

金 敬 萬

I. 序 言

韓國에 우리말 速記가 創案되어 國家社會에 공헌해온지 30餘年이 흘러갔다. 그 동안에 速記術의 大衆普及 및 速記文化의 開花를 위해 創案者들이 私設速記士養成所를 開設하며 速記士養成에 盡力한 바 있고 1951年 12月에는 避難首都 釜山에서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民議院事務處直屬으로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가 設立되어 10회에 걸쳐 多數의 速記士를 養成輩出한 바 있다.



그러나 5·16後에는 國內速記界가 踏歩狀態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私設養成機關마저 消滅狀態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963年 12月 17日 民政으로 移讓될 當時는 5·16以前의 既成速記人들과 그간 私設機關에서 養成된 速記人들이 새로 構成된 國會事務處에 任命된 이후 數次에 걸쳐 實力을 갖춘 速記士의 增員이 있었으나 끝내는 供給(質)이 需要에 미치지 못하는 現實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登龍의 門은 좁은 데다 速記는 長期間의

集中的인 研修를 要하는 技術로 習得의 希望者가 매우 적음으로 인해서 私設養成機關의 運營이 어려워 教育이 중단되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加速化하는 發言速度에 對應하기 위한 研究 또한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速記士의 供給不足을 打開하며 速記術의 發展이라는 命題에 副應하려고 1968年 2月에 國會速記士養成所가 國會內에 設置되었다.

이에 國會速記士養成所의 그간의 經過와 現況을 정리하여 速記界의 앞날에 參考資料가 될까 하여 紹介한다.

II. 設立過程

國會速記士養成所는 1968年 2月 3日 國會速記士養成所設置規程(國會運營委 第3次會議通過)에 의해 「速記에 관한 專門의 인 技術과 理論을 教授研究하며 將次 國會에 從事한 速記士를 養成하기 위하여 國會事務處內에 養成所를 둔다」라는 目的을 가지고 設立되었고 同年 5月 20日에는 議會速記法式의 創案을 위한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內規(國會事務總長決裁)에 의해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가 國會速記士

養成所內에 構成되었으며 다음해인 1969年 1月 10日에는 이의 實用을 위한 議會速記法式創案議決書가 採擇되었다.

Ⅲ. 養成過程

國會速記士養成所設立 初年度인 1968年度에는 多數의 速記士를 확보하고 있는 逸波法式과 高麗法式 2個法式을 採擇 1個學級(30名)씩 2個學級(60名)을 教授하여 28名(男 18, 女 10)의 第1期 修了生을 輩出하였고 公開採用試驗結果 7名中 6名이 國會事務處에 新規採用되었다.

議會速記法式을 教授한 第2期生 때는 8名이 다시 任用돼 議會速記法式의 實用은 成功裡에 結實을 보아 現在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2期生 以後는 議會速記法式創案에 대한 實用與否는 물론 一年修了後 速記實務可能者의 輩出比率 速記習得의 適性에 대한 年齡別 測定 그리고 理解力 등의 測定은 물론 速記士로서의 갖추어야 될 教養科目의 選定등에 대한 數次의 學則改正도 거듭되었다.

Ⅳ. 結 語

停止없는 時間의 흐름은 새삼 歲月의 빠름을 實感케 한다.

國會速記士養成所가 設立된지도 어언 9個星霜!

우리의 宿願이던 法院에로의 進出의 문이 열렸는가 하면 企業公開로 速記人의 進出 또한 밝은 展望이 아닐 수 없다.

速記界의 앞날이 꼭 今年과 같다고 斷定은 할 수 없지만 今年度의 경우 國會事

務處에서는 2회에 걸쳐 公開採用試驗을 實施한 結果 採用豫定人員 15名에 미달되는 10名 밖에는 充員되지 않았다. 一般이 認識하고 있는 平凡한 數단을 채우는 速記士가 아닌 우수한 實力을 갖춘 脚光받는 速記界로의 좋은 轉換의 契機가 될 것을 促求한다.

速記는 學問이며 技術이다. 하지만 學問의 側面에서 要求되는 것은 보다 맞는 보다 넓은 識見이다. 그러나 技術的 側面에서 要求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適性에 많은 技能이 同時에 要求되고 또 充足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年齡制限에 의한 보다 나은 實力者의 選定만이 速記學術研修에 必要한 最善의 方法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現制度가 採擇運營되고 있다.

勿論 아직도 是正되고 選擇해야 할 수많은 문짓점들이 山積돼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速記人은 결코 우매하거나 우둔한 두뇌의 所有者는 아니다. 고르고 다듬어진 속에서 다시 고르고 다듬어 選擇되는 것이다. 다만 技術習得過程에서 進學을 中斷해야 하는 時間의 空白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이 空白을 메우기 위한 倍加의 努力은 速記人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며 반드시 걸어야만 된다.

速記人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사람)들의 넓은 理解와 認識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쉽없이 邁進하는 後進들에게 忍耐必成의 聲援을 보내며 養成所設立 이후 現在까지의 各種統計를 통하여 現況을 살펴본다.

各 種 統 計

1. 入 學 現 況

期別	學年度	志 願 者			合 格 者			比 率	備 考
		男	女	計	男	女	計		
1	1968			680	46	14	60	11.3 : 1	
2	1969	385	263	648	63	37	100	6.5 : 1	定員規程改正
3	1970	271	145	416	67	33	100	4.2 : 1	
4	1971	408	220	628	70	30	100	6.3 : 1	
5	1972	501	337	838	72	28	100	8.4 : 1	
6	1973	627	430	1,057	68	32	100	10.6 : 1	
7	1974	478	368	846	69	31	100	8.5 : 1	
8	1975	512	402	914	40	20	60	15.2 : 1	定員規程改正
9	1976	560	416	976	32	18	50	19.5 : 1	定員規程改正
合 計		7,003			770			9.1 : 1	

註：志願者對合格者之平均比率은 9.1 : 1이며 3次에 걸친 學則(定員規程) 改正은 速記實務能力者輩出(供給) 豫測과 需要豫測으로 볼 수 있다.

2. 修了現況

期別	學年度	在 籍			修 了			優 等			入學對修了比率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1	1968			45	18	10	28	7	0	7	47%
2	1969			53	17	13	30	3	2	5	30%
3	1970	27	19	46	17	16	33	2	4	6	33%
4	1971	29	17	46	17	12	29	2	2	4	29%
5	1972	37	17	54	25	16	41	3	2	5	41%
6	1973	21	23	44	14	20	34	1	3	4	34%
7	1974	23	19	42	18	18	36	2	1	3	36%
8	1975	25	19	44	18	17	35	3	1	4	58%
9	1976		教			育			中		
合 計		374			266			38			35%

註：入學對修了比率은 35%이며，在籍對修了比率은 71%이다. 따라서 速記實務能力者는 修了生의 20~30%程度로 豫測할 수 있다.

3. 採用 現 況

區 分 \ 年度別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 9 7 6		計	
	1 回		2 回								
採用豫定人員	7	8	7	7	10	6	6	5	10	66	
養成所	男	6	3	2	4	6	2	4	2	3	32
	女	0	5	4	3	4	3	1	2	3	25
其他	男	1		1				1			3
	女						1				1
計	7	8	7	7	10	6	6	4	6	61	
過 不 足								-1	-4	-5	

註：毎年 平均 7-8名이 新規採用되었으며 1976年度는 採用豫定人員에서 5名의 不足 現況을 보이고 있다. (이 表는 速記員 專門職으로 하고 있는 國會事務處에 採用된 現況이다)

4. 期別採用(就業)現況

區 分 \ 期 別	1	2	3	4	5	6	7	8	計	備 考
	男	7	5	6	3	2	3	3	3	32
女	2	3	7	4	1	3	2	3	25	
計	9	8	13	7	3	6	5	6	57	

5. 年度別 合格者現況

年度	期別	男	女	計	合 格 者
1969	1期	6	0	6	高 隆 繁, 朴 大 成, 金 致 元, 玄 柄 高, 河 良 培, 李 永 烈
	東邦	1	0	1	金 冠 鎮
1970	1期	1	2	3	崔 性 周, 鄭 桂 泳, 尹 玉 姬
	2期	2	3	5	吳 衛 根, 洪 淳 寬, 梁 順 喜, 李 賢 熙, 金 明 式
1971	3期	2	4	6	李 世 喆, 韓 相 九, 安 喜 榮, 任 明 心, 金 仙 玉 車 公 順
	東邦	1	0	1	全 在 坤
1972	2期	1	0	1	盧 熙 南
	3期	2	1	3	趙 永 昌, 朴 順 必, 張 淑 卿
	4期	1	2	3	李 承 哲, 金 銀 珠, 崔 禮 淑
1973	2期	2	0	2	高 錫 光, 金 福 童
	3期	1	2	3	朴 正 鎬, 金 彩 榮, 金 敬 海

	4期	2	2	4	柳承寬, 金銅洙, 金銀淑, 李英愛
	5期	1	0	1	權寧嫻
1974	3期	1	0	1	金京中
	5期	1	1	2	鄭大吉, 李美海
	6期	0	2	2	孫在玉, 金學順
	東邦	0	1	1	鄭明順
1975	6期	3	1	4	趙正昫, 金鍾喆, 洪基杓, 金蘭姬
	7期	1	0	1	柳成秀
	東邦	1	0	1	李京植
1976	7期	2	2	4	崔吉柱, 朴致明, 朴起晚, 李柱成
	8期	3	3	6	金珠成, 尹駿億, 姜秀憲, 朴英秀, 金化子, 朴彌香

6. 退職現況

年度別	期別	姓名	性別	備考
1973	1	李永烈	男	轉職(總務處)
"	3	任明心	女	轉職
1975	1	鄭桂泳	"	結婚
"	2	梁順喜	"	"
"	2	金明式	"	"
1976	1	尹玉姬	"	"
"	4	李英愛	"	"

7. 國會速記士養成所學則內規改正現況

(1969年 1月 8日 改正)

原 案	改 案 正
<p>第4條 (專攻科目) 養成所에 速記專攻料를 두며 다음의 速記法式을 教授한다.</p> <p>1. 逸波式速記法</p> <p>2. 高麗式速記法</p> <p>3. 議會式速記法</p> <p>다만 1969年度부터는 第1號 및 第2號의 專攻科는 이를 廢止한다.</p>	<p>第4條 (專攻科目)</p> <p>.....議會 速記法式을</p> <p>(以下削除)</p>
<p>第5條 (入學資格) 養成所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20歲 以下의 男女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 한다.</p>	<p>第5條 (入學資格)</p> <p>.....35歲.....</p> <p>.....</p> <p>.....</p>
<p>第8條 養成所의 學生定員은 每學級當 30人으로 한다.</p>	<p>第8條</p> <p>50人.....</p>

(1970年 2月 4日 改正)

<p>第5條 (入學資格) 養成所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35歲 以下의 男女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 한다.</p>	<p>第5條 (入學資格)</p> <p>..... 20歲</p> <p>.....</p> <p>.....</p>
---	--

(1975年 1月 25日 改正)

<p>第8條 (定員) 養成所의 學生 定員은 每學級當 50人으로 한다.</p>	<p>第8條 (定員)</p> <p>..... 50人 以內로.....</p>
--	---

第9條 (科目 및 時間) 養成所의 學
 科目 및 時間配定比率은 다음에 의
 한다.

速記學	週	14時間
國語	〃	1〃
法制大意	〃	1〃
經濟大意	〃	1〃
一般常識	〃	1〃

第9條 (科目 및 時間)

速記學	週	14時間
國語	〃	1〃
英語	〃	〃
法制大意	〃	〃
經濟大意	〃	〃
國史	〃	〃

* 나의 所願 *

—白凡 金 九—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에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계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잊을 수 없는 速記

朴 一 泉

(制憲國會速記士)

나는 1946年 解放된지 1年後에 中國에서 歸國하였다. 高等學校를 卒業하던서부터 速記에 關한 冊子를 蒐集해 온 것이 제법 많았다. 美國의 「그래그」式, 英國의 「피트먼」式, 中國의 簡代速記學, 日本의 早稻田式, 中根式 등이 冊을 中國으로 갈 때부터 돌아 올 때까지 가지고만 다녔으니 첫째로 잊을 수 없는 速記에 對한 나의 追憶이기도 하다. 잃었던 祖國의 光復에의 喜悅……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말 速記術의 必要性이 到來할 것을 切感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마음놓고 本格的인 整地作業에 착수, 내뺀은 晝夜로 열심히 그 研究에 沒頭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姜鐵遺先賢님을 交友하게 되어 서울식을 傳受 받게 되면서 부터 獨自의인 創案은 拋棄하고 말았다. 그 理由는 덜지않아 南韓過渡政府의 樹立과 立法議院이 開院하게 되면 많은 速記士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한 나머지 每日같이 長時間의 熟練을 위한 速度練習을 어찌나 많이 했던지 손목과 손가락까지 아팠던 생각이 떠오른다.

사람이란 무엇이든 열심히 執念하고 實行만 한다면 「何事不成」이란 말과 같이 껌 껌 손을 놀리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多少 筆記가 成熟해지자 立法議院이 開院되어 뜻한바 末席이나마 速記士라는 職業을

갖게 된 것 또한 잊을 수 없는 速記라는 題目の 두번째의 追憶이기도 하다.

官 民選議員이 한 자리에 모여 國事를 論한다는 것도 처음의 일이고, 民主的인 會議進行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또한 이에 隨伴된 記錄도 처음의 일이다. 지금은 錄音器도 있고 해서 正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편리한 利器도 있으나 그 때에는 없었다. 첫발을 디딘 會議場에서의 記錄은 感傷無量하면서도 마음이 몹시 설레었다. 어떤 때는 재미나는 議員發言에 心醉되어 그만 運筆을 멎고 있다가 아차 失手했구나 하고 그 뒤를 이어 猛烈히 追跡하는 일도 몇번 있었다. 이렇게 全神經을 끈두세워가며 記錄時間이 끝나면 짝을 이룬 두 사람은 事務室에 돌아와서 正誤를 확인하기 위하여 本文을 判讀한 후에 反文으로 들어가기에 바빴다. 그러나 草創期에는 會議進行도 익숙하지 못한 탓인지 근엄한 자세로 자신의 失手が 되지 않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議員의 發言頻도가 좀 낮았던 것만은 事實이다. 왜냐 하면 記錄하는 자신의 速度와 알맞은 때문이다. 차차 會가 거듭 될 수록 發言도 빨라지니 記錄하는 쪽도 그마만치 速筆驅使에 熟練이 뒤따른다. 忍苦耐練 그야말로 말의 寫眞術과도 같이 完璧을 期하겠다는 努力은

대단들 하였다. 세일은 흘러가는 동안 北傀의 不意의 南侵으로 6·25動亂을 맞아 부득이 釜山으로 避難을 가서 숨을 쉴 겨를도 없이 職務을 달리 하여 美八軍司에서 中共軍捕虜를 審査하는 職務을 맡고 한편으로는 海軍 情報監室에서 特種放送을 聽取하는 速記情報의 一翼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그런 동안 釜山商業學校에서 他校에 由來없었던 中國語와 速記科目을 新設하게 되어 數年間 敎鞭生活을 하게 되었다.

이 역시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速記라는 技術의 因緣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實務가 아닌 敎學的이었으므로 내 나름의 體系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몹시 精神을 消耗했다.

內容인즉 우리 말의 語文과 같이 子母音은 橫(橫線·縱線·斜線·半橢圓) 등으로 하고 받침은 語尾에다 붙이고 助動詞는 別途로 略字를 體系化해서 一泉式이라는 體制를 가취하면서 宿願의 講義를 하게 되었다.

또한 歲月은 흘러 政府는 收復하여 앞을 다루어 上京하니 나 역시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지 않은가, 좀 次元을 달리하는 앞날의 行路를 開拓하고 젊은 雄志를 살

려야 하겠다고『着想한』것이 月刊雜誌「雄辯 다이제스트」였다.

知性人的 伴侶誌라 自處해 가면서 그의 取材源은 國內外的 著名人士들의 名講演을 速記掲載하는 것 外에 學生雄辯大會의 開催等 다양한 活力을 서슴치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앗질하기만 하다. 어떻게 그 막중한 일을 해 냈는지…… 조그마한 事務室에서 社長職에서 부터 計劃·編輯·取材速記·校正·印刷·配本·收金·使換일 까지 兼한 經一人體制的 出版社였다. 누가 보든지 이만한 運營體制라면 많은 致富가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理由는 不問可知 短六個月의 壽命을 채우지 못하고 版權이 取消되고 말았으니 기막힐 노릇이었다.

이래서 나의 雄志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이 나의 잊을 수 없는 速記의 마지막 얘기가겠으나 그 失敗의 原因은 冊을 만드는 데만 注力했지 冊이 나가서 그 代錢이 運收돼야 運營이 원활해 진다는 計劃의 未盡이었다는 것을 自覺하게 된 것이 지금의 생각이며 이 일이 어언 二十年前의 일이다.

잊을 수 없는 速記가 남은 내 生涯에 다시 올지는 모르는 일이다.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Counse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宣傳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內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분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or) : 本協會宣傳部 Tel 7802-2375



第 6 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5월의 눈부신 태양아래 주위에 잘 가꾸어진 造林의 新綠이 마냥 싱그럽고 그 아래는 太公들이 낚시할을 드리우는 漢江이 유유히 흐르는 韓國産業銀行研修館의 부근 잔디球場에서 올해도 速記人들의 큰 잔치가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協會 金龍壽會長은 金鎮基副會長이 代讀한 大會長人事를 통해 「오늘의 速記人體育大會는 全會員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情誼를 나누고 大自然의 신선함을 吟味하며 競技를 통하여 서로의 弱點을 도모하고 靑壯한 氣血과 強健한 體力을 기르는데 큰 뜻이 있다.

또한 우리는 昨年 全國速記人安保團起大會에서 總力安保를 다지는 우리의 決意를 內外에 闡明한 바 있는데 이러한 단호한 決意는 北僞의 挑戰挑撥이 있는 限 계속될 것이며 특히 우리 速記人은 未來指向的인 歷史意識과 健奮精神을 가지고 困難克服의 隊列에 앞장서 奮 闘을 강조한다」는 要旨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競技指導委員會 祝辭에서 「우리 速記人은 항상 나라사랑 健奮사람 自己사랑을 가지고 자난할 장점 發揮을 갖고 살자」고 했다.

다음에 이 大會經過를 여러 會場에게 알림으로써 다음에도 즐거움의 넘치는 멋진 大會가 될 것을 기약해 본다.

☆ 大會經過 ☆

1. 日 時 : 1976년 5월 2일(日)
2. 場 所 : 韓國産業銀行研修館
3. 參席會員 : 120명
4. 競技種目 : 蹴球 및 陸上競技
5. 各팀 紹介

왕 소 팀 : 國會速記課 第1,2擔當會員

청 통 팀 : 國會速記課 第3,4擔當會員

백 호 팀 : 國會速記課 第5,6擔當會員

독수리팀 : 國會速記課 編輯擔當會員

사 자 팀 : 外部會員

백 마 팀 : 來賓

6. 對戰結果

綜合優勝 : 왕소팀 準優勝 : 청통팀

3位 : 백호팀

◇ 蹴球競技

優勝 : 왕소팀 準優勝 : 청통팀

3位 : 독수리팀

◇ 女子 공굴리기繼走

1位 : 왕소팀 2位 : 백호팀

3位 : 독수리팀

◇ 男子 모래주머니나르기

1位 : 청통팀 2位 : 백호팀

3位 : 독수리팀

◇ 600m繼走

1位 : 청통팀 2位 : 백호팀

3位 : 독수리팀

7. 【本大會를 위한 贊助】

<金一封 喜捨>

丁一權 議長 具泰會 副議長
李敏雨 副議長 金龍泰 會長
維政會 權孝燮 議員 國會事務處
李鏞脈 國會事務總長
金鍾浩 國會圖書部長
鄭東祐 議事局長 編輯係長
李龍珠 會員 鄭應采 會員
金福振 會員 李相鎬 會員
東邦速記學院 光明朝起會

<記念品 喜捨>

金鍾河 議員 崔秉秀 會員
李永烈 會員 황도천 氏
이기철 氏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

☆ 參觀記 ☆

○ 蹴球에 선전의 첫 對陣은 優勝을 장담하는 청룡팀과 저력있는 백호팀의 대결로서 청룡의 盧熙南選手가 경기시작 5분만에 선취점을 얻고 後半에 다시 한점을 추가해 백호 「풀키퍼」 金基英選手의 善防에도 불구하고 청룡이 2:0으로 이겨 氣勢를 올렸고, 第2 對陣의 내빈으로 구성된 백마팀對 사자팀은 막상 막하의 熱戰

을 벌여 3:3으로 비겼다.

○ 이어서 벌어진 황소팀對 독수리팀의 對戰에서 前半에는 황소의 일방적인 攻勢였으나 독수리의 밀집 방어와 「풀키퍼」 老將 韓鍾烈 選手의 美的 善防으로 좀처럼 득점의 「찬스」를 살리지 못하다 後半에 가서 2「골」을 넣어 승리를 굳혔는데 競技終了 3분을 남기고 황소팀의 「풀키퍼」 鄭明吉 選手는 梁源龍 選手에게 友情어린 한 「골」(?)을 허용하여 독수리「팀」의 체면을 세우게 했다.

○ 이번 大會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子女競技는 보는 사람마다 童心の 世界로 돌아가게 했는데 69名이나 참가한 이 競技는 速記擔當官室의 진행으로 未就學~1學年 2~3學年 4~6學年으로 나누어 푸른 잔디위에서 「카드」 보고 뛰기, 「카드」 숫자 계산하기 등의 「게임」을 벌였는데 이들 바라보는 場內에서는 흥겨운 웃음꽃이 피었고 응원하는 얼마 아파볼도 마냥 흐뭇한 표정이었다.

○ 陸上競技에서는 議事局代表로 활약하던 黃寅河 選手가 眞面目을 유감없이



(入場式光景)

발휘해 男子모래주머니나르기와 600m 繼走에서 청룡팀이 각각 1등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女子 공글리기 繼走에서는 미리 作戰會議까지 했다는 황소팀의 選手들이 가벼운 「비취분」을 요령있게 몰아 1등을 했다. 독수리팀은 陸上 全種目에서 3등을 했는데 추구 3, 4位 결정 주춤에서 마저 주춤을 하여 3등이 되었다.

○ 優勝「집」의 向方이 결정되는 결승전인 황소팀對 청룡팀의 大決戰에서는 始終 一進一退가 거듭 되었는데 청룡은 前半에서 「페널티 킥」을 失蹴해 득점할 귀중한 기회를 놓쳤으나 황소의 金京中 選手는 前半 終了를 앞두고 왼발「슛」으로 黃金같은 한걸음 떼내 優勝의 契機를 만들었다.

後半에서 청룡은 어떻게 해서라도 失點을 단회하려 總攻擊을 폈으나 「골키퍼」鄭明吉 選手의 善防으로 無爲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 황소팀에는 鄭大吉 選手가 攻擊으로 활약해 「형제는 용감하였다」는 衆論을.

○ 이날 해를 거듭할 수록 全連記人의 祝祭로 발전하는 體育大會에 많은 來賓과 함께 往年의 國會速記士들 특히 處女 시절 速記士로 근무했던 회원들이 子女를 데리고 참석해 意氣를 더했으며 행사진행을 主管하여 심황리에 마친 擔當官室要員은 施賞과 閉會式이 끝나고 어느덧 夕陽이 마지막 熱情을 배우려는 듯 붉게 물들자 주변 정리와 歸路를 재촉했다.

< 與 >

原稿募集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辦하고 會員相互間의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 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興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者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本協會 宣傳部(國會速記課) Tel. (7802) 2375

- ◇ 表紙그림.....세로 가로 15cm정도
-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 回想記.....200字原稿紙 15~25枚
- ◇ 隨筆.....200字原稿紙 15~20枚
- ◇ 詩, 詩詞, 散文, 기타提言 등

※ 採擇된 原稿에는 所定の 稿料를 드립니다.



張 僖 晉

나는 매사 소시민적 근성으로 일관하면서 「思考」 자체를 크나큰 부담으로 여겨왔다. 때문에 思考의 영역이 넓어진다 것은 그만큼 번뇌를 더하는 일이라 간주하고는 무사안일의 寧日을 꿈꾸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원가를 구사한다는 것의 아예 기피해 버렸었다.

× × ×

그런 내가 어떻게 편지만은 그리도 열심히 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남들이 두툼한 日記帳에 한두 「페이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나는 「메모」에, 「노트」장에,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내 쓰러던, 차라리 落書에 가까운 것들.

뚜렷한 對象이나 受信處도 없는 익명의 사연들을 적곤 했는데 그것은 내 生活의 적나라한 破片들이었던 듯 싶다.

× × ×

요즘은 그 習性이 고질화되어서 하루라도 원가를 쓰지 않고는 不眠의 難을 이루기 일쑤이다. 손수건보다 더 지성스럽게 점검하는 서너장의 봉합엽서.

生活을 조개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간편함과 더불어 지나치게 개방적인 관계엽서에 비해 적당한 폐쇄성과 지면의

적당함.

× × ×

요즘의 生活은 정말 하는 일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옛날 같으면 긴 四角의 단정한 書信들을 손윗 어른께 곧잘 띄웠던 단 근태에 와선 年初에 年賀狀 하나 날리고는 歲暮를 맞게 되니 너무 염치가 없다.

× × ×

이런 경황 속에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면 葉書라고 할는지.

그것도 한가롭게 차분한 여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찾짐, 약속시간이 육이르든가, 기다려야 할 경우 잠잠한 음악이 흐르는 적당한 조명과 소음, 그 속에 묻혀 엽서를 쓴다. 그럴라치면 다분히 哀想의 이기 마련이어서 감도질은 사연으로 변질되어 버리곤 하는…….

× × ×

내게는 「민」이라는 오뎨 벗이 있다. 내가 쓰는 편지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지나의 葉信들의 受信處.

나의 日常의 變化들은 그녀가 노상 지켜보듯이 점철되며 그 흐름의 감지를 통하여 생각하며 하나의 分身처럼 서트가

답음한다. 글씨까지도…….

× × ×

사람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한다.

어떤 이는 '술로, 어떤 이는 당구로, 「쇼핑」으로, 「드라이브」로, 파식으로, 잠을 자는거로, 肉身에 고통을 가하는 힘겨운 노동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저마다의 비장의 묘법들을 쓰는가 보다.

나는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일때는 편지를 쓴다.

사실 밤새 쓰고난 편지치고 아침에 亡失되지 않은게 없지만 아침이면 다시 청정한 精神으로 원상복귀된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은 일순간의 걱정을 참아 내는데 귀착되는가 보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生活의 周邊, 조금만 참으면 실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우고 싶다. 마치 人魚공주가 건기 위해서 발가락의 뜨거운 아픔을 참아 내듯이…….

× × ×

금년 여름 휴가때는 모처럼 日記를 썼다. 길을 떠날 때는 예외없이 여닐풍장의 엽서를 마련했지만 돌아오는 길엔 단 한장도 소모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겨왔다.

이상하게도 日記를 쓰고 나니까 편지를 쓸 마음이 일지 않았다.

마음 두는 곳은 오직 한군데 일 수 밖에 없다는 限界性을 절감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 × ×

아직 내제 있어 포기하지 않은 꿈이 있다면 빗에게 편지를 쓰듯 뱃목을 타고 흐르다 물에 닿으면 담담히 내려서듯 그러한 隨筆들을 적고 싶다.

日常의 사소한 얘기들을 승화시키는 業書를 쓰듯 人生을 살고 싶다면 욕자는 너무 쉽게 살려 든다고 빈축을 할까!

그렇더라도 지나친 권위와 적식속에 自我를 상실하며 사라지는 피동성보다는 훨씬 솔직한 자세일성 싶다.

眞實! 그 하나만이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지론을 아지는 저버릴 수가 없는 까닭에…….

설령 어느날 世上은 진실만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어느 누가 육박지르더라도 나는 나의 我執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

× × ×

겨울이다.

첫눈이 오는날 나는 세편의 편지를 받았다. 그때 나는 「버스」속에서 첫눈을 맞았는데 슬렁이는 걱정을 맞보았다.

아직도 氣象變化에 동요되고 있다는 것은 成熟되지 못한 感情달일까!

민이는 요즘 무얼 기다리니? 사람은 누구나 추억이런게 있잖니? 그 추억중엔 오래 간직하고 싶은게 있는가 하면 기억하기도 싫은게 있지, 지금 나의 어설픈 감상은 아마 오래 오래 간직하고 싶은 추억담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스울까?

그래서 뭘 기다린다.

난 오늘같은 날엔 첫눈이 기다려지지, 그리고 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진다. 설령 그게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거라도 삼식과 지성을 통째로 거부해 버리고 싶어서…….

손이 시렵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어서 우습다는 내리던 내 따뜻한 군밤을 한봉지 사주마…….

× × ×

곧두 벗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금년 겨울은 풍성한 눈이 내리길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있었던 얼굴들을 하나 하나 헤어 보면서 지진 사연의 일부를 물을 수 있도록…….

× × ×

世上을 오래 살고나면(?)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초연해 질 수 있는가 보다.

아이적에는 겨울이면은 눈내리는 것을 내내 기쁨으로 기다렸고 조금 컸을 적에는 「크리스마스」다 年末이다 해서 즐겁게 놀 생각만 했는데 이제 人生이 뭘까 생각하는 나이가 되니까 지나가는 모든 것이 공연히 슬프고 안타깝기만 하다.

어머님 이마위에 주름이 하나 둘 는 것이 새삼 눈물겹고 아버지의 잔기침에 뎀스케 마음이 아파 오기도 한다.

× × ×

人生은 길도 없는 어두운 숲과 같아서 어느 순간 멍청히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되돌아 볼 때가 있다. 그저 世上 가는대로 살아가면은 산다는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텐데, 하지만 남보다 잘 살아

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가치있게 살아야 하기에 고심하고 후회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世上을 살다보면은 처음 생각했던 그 길 이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는 그만 이 世上을 훌쩍 떠났다가 다시 새출발을 하고 싶지마는 世上이라는게 마음대로는 안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世上보다 더 훌륭한 곳이 어딘지 알지못 못하니 까 다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잘못을 뉘우친 자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이 世上이 춥고 싸늘하더라도 우리는 훈훈한 人情에 묻힐 수 있을 터이니 까!

× × ×

人生이란 누구든 미리 알지 못하는 것, 運命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불행한 사람들은 이 世上을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미지수이기에 希望을 품고 살아간다.

오늘은 못살지마는 내일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젊음도 보내고 사람도 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나 아닐까…….



꽃 불

金 銅 洙

巨木의 꽃불을 켜고
 무지개 나래를 따라
 바위를 쪼는 石手야
 忍耐 두다리는 우둔을
 嗤笑하느니——
 하 그리 많은 날도
 알고보면 짧은 것을……

하늬바람이 성긴 가지잎새 스칠때
 心淵은 꽃농따라 號哭한다
 정녕 사위되는 可憐의 부대끼이어!
 波紋지는 梵鐘소리에 啓示를 구하는가

이 밤 胎動하는 숨결 덮고
 하이얀 고요를 움긴다
 飛翔의 閃光
 무지개의 빛남도
 많은 날의 斷片이며 伴侶일진대——
 기다림은 내일위한 미리내되어
 마스한 靈魂의 호통일러라
 하여 이제는 너만한 꽃불을 켜라

用語解説(10)

研究委員會

○關稅運輸制度

輸入한 原資材를 加工輸出했을 경우 該當 原資材에 대해서는 輸入할때 支拂한 關稅를 돌려주는 制度

○납사(Naphtha)

정확한 表記는 「납사」, 石油의 成分 가운데에서 揮發油와 燈油의 中間에 있는 粗製揮發油. 沸點이 150~220°C로 제트 연료, 塗料溶劑, 크리닝 용액 등으로 使用된다. 분해해서 이틸렌, 프로피엔 등 石油化學의 原料를 만든다.

○過誤納

一般的으로 中間豫納에서 가장 많이 發生하는 것으로서 直前期稅額의 2分之 1을 豫納했으나 決算結果 稅額이 그에 未達되어 생기는 過納과 稅法을 잘 모르는 등의 原因으로 내지 않아도 될 稅金을 내는 豫納 등을 말하는데 그밖에 稅務當局의 違法不當한 課稅行爲로 생기기도 한다.

이 過誤納分은 納稅者의 審査請求나 異議申請 또는 當局의 職權訂正으로 還付된다.

○亂數表

0에서 9까지의 數字를 順序없이 아무렇게나 나열한 表, 統計調査에서 標本을 無作爲抽出하는 경우나, 情報交換을 위한 암호 등으로 쓰인다. 間諜들이 竊해하는 亂數表는 암호용으로 쓰이는 것이 大部分

이다.

○뱅크 론(Bank loan)

銀行借款 最近 國際적으로 널리 流行되고 있는 國際中長期 金融의 一種으로 빌려주는 側과 빌리는 側이 모두 銀行인 借款, 一般商業借款을 빌리는 나라의 銀行이 支給保證을 하나 銀行借款은 銀行끼리의 信用만을 믿고 支給保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償還期間은 1年以上 7년이 보통이고, 利率은 6個月짜리 유로달러 金利에 一定率(1.5%)을 加算하는 것이 通例이다.

○產學協同(Cooprative System)

産業社會에 있어서 企業의 技術革新을 위해 大學이 財政援助를 받는 代身으로 企業이 委托한 研究을 行함으로써 協力體制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特定企業에 大學이 奉仕하게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國家의 體力를 기울여 科學技術을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強化에 나간다는 見地에서는 극히 有用하고 장려할 만한 體制이다.

○丙配稅

丙種配當利子所得稅를 略해 부르는 것, 現行 所得稅法은 配當所得利子所得을 甲乙丙의 셋으로 區分하고 있다.

甲種은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利息이나 剩餘金의 配當 또는 分配所得 社債利子, 預金利子 등을 말하며,

乙種은 外國法人으로부터 받는 利息이나 剩餘金의 配當 또는 分配, 外國法人이 發行한 鐵櫃의 利子, 國外에서 支給하는 預金利子 및 債利利息을 말하며,

丙種은 非營業代金(동경 稅債)의 利子를 말하는데 이 利子에 대한 稅가 丙配稅다.

第 9 回 定期總會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1. 日 時：1975年 12月 27日 午前 11時
2. 場 所：國會 146號 會議室
3. 出 席：在籍會員 154名中 95名出席
4. 附議案件

- (1) 會務報告
- (2) 1975年度決算承認 및 監査報告
- (3) 1976年度事業計劃案 및 豫算案의 承認件

5. 會務報告

1. 執行部署決定

總務財政部：高太仲，宣傳部：金允洙，事業部：黃寅河，外國語部：盧英民，研究委員長：金永春，資格審査委員長：李康賢，無任所：鄭明吉 金福童

2. 放學을 이용한 速記講習

시 기	기 간	장 소	강 의 법 식	수 강 인 원	수 요 인 원
겨 울	75	국회속기사양성소 동방속기학원	연구위원회 동방「그레그」	국어 697명	국어 423명
	1.13~2.1			영어 201명	영어 125명
여 름	75	동방속기학원	동방「그레그」	국어 274명	국어 173명
	7.28~8.20			영어 184명	영어 110명

3.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회 수	일 자	장 소	용 시 인 원	합 격 인 원
8 회 (봄)	75. 4. 27	국회속기사양성소 동방속기학원	국어 각급 75명 영어 각급 9명	국어 각급 13명 영어 각급 3명
9 회 (가을)	75. 11. 2	국회속기사양성소	국어 각급 73명 영어 각급 9명	국어 각급 14명 영어 각급 3명

4. 各級學校 및 社會團體速記 講習

기 간	예상단체및장소	인원	강사
'75 3월~8월	서울시립부녀사업관	50명	김영춘
'75 3월~12월	창덕여고	70명	김복동

5. 會誌發刊 : 15, 16號 發刊

6. 體育大會 : 5.18 泰陵選手村

6. 議決된 案件

(1) 1975年度決算

(1974. 12. 20~75. 12. 16)

입			출		
관	항	예 산 액	관	항	예 산 액
기	본 수 입	150,000	회	외 비	104,000
	월 회 비	144,000		정 기 총 회	50,000
	입 회 비	6,000		회 외 비	54,000
	사 업 수 입	1,263,000		경 상 비	44,400
	광 고 료	33,000		사 무 비	44,400
	방 학 강 술 료	1,120,000		수 용 비	5,000
	기 능 검 점 료	110,000		공 파 금	5,000
찬	조 금	400,000		사 업 비	1,863,500
	잡 수 입	16,041		방학이용강습	894,200
	이 월 금	517,859		속기경기대회	100,000
	계	2,346,900		기능검정시험	95,000
				회 지 발 간	480,000
				속기학술연구	102,000
				체 육 대 회	192,300
				판 공 비	150,000
				예 비 비	180,000
				이 월 금	926,152
				계	2,891,662

<監査報告書>

定款 第16條의 규정에 의거 1975年 12月 16日현재 本協會의 財政現況을 監査한 결과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75. 12. 27

監 事 金 善 弼

<2> 1976年度 豫算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관	항	예	산
기	본 수 입		293,000	회	의 비		154,000
월	회 비		288,000	정	기 총 회		100,000
입	회 비		5,000	회	의 비		54,000
사	업 수 입		1,334,600	경	상 비		62,400
방	학 강 습		1,204,600	사	무 비		62,400
수	수 수 료			수	용 비		5,000
기	농 검 정 료		130,000	공	과 금		5,000
찬	조 금		420,000	사	업 비		2,141,200
잡	수 입		25,803	방	학 이 용 강 습		975,000
이	월 금		926,152	속	기 경 기 대 회		130,000
				기	농 검 정 시 험		144,000
				회	지 발 간		444,200
				속	기 학 습 연 구		102,000
				각	급 학 교 및 사 회		96,000
				단	체 속 기 강 습		
				체	육 대 회		250,000
				관	공 비		200,000
				예	비 비		436,955
계			2,999,555	계			2,999,555

會 務 日 誌

75. 12. 17 第65次 理事會
1. 第9回 技能檢定試驗 結果報告
 2. 1975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
 3. 1976年度 事業計劃書作成 및 76年度 歲入歲出豫算案 審議
12. 27 第9回 定期總會
1. 會規改正
 - ① 第16條中 入會金 正會員 300원 以上을 500원 以上으로
 - ② 17條中 會費 月 100원을 月 200원으로
 2. 76年度 事業計劃 및 歲入歲出豫算承認
76. 1. 12 第18回(冬季) 放學講習 開講
- 講議場所: 東邦速記學院
 受講人員: 國語速記 478名
 英語速記 201名
1. 31 第18回 放學講習修了
- 修了人員: 國語速記 340名
 英語速記 130名
2. 5 第66次 理事會
- 18回 放學講習報告
2. 6 法人定期報告書 發送(文化公報部)
 3. 13 昌德女高 速記開講(講師 金福童)
 3. 17 日本의 速記(No. 480)接受(宣傳部)
 3. 22 速記士料金 支拂에 관한 公文 1件 接受(調達廳長)
 3. 25 速記士料金 支拂에 관한 公文 回答
 4. 8 第29次 資格審査委員會
 4. 19 第67次 理事會
 - 第10回 技能檢定 및 第6回 體育大會 日時決定
 4. 25 第10回 技能檢定實施
 - 應試者 81名
 4. 29 文化公報部所管 非營利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관한 規則 1部 接受
 5. 2 第6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 場 所: 產業銀行研修館(강남구 하일동)

綜合優勝：황소팀 準優勝：청룡팀 3位：백호팀 4位：독수리팀

6. 4 1. 第68次 理事會 및 第30次 資格審査 委員會
2. 第6回 體育大會結果報告 및 第10回 技能檢定合格者決定
7. 8 第69次 理事會
第19回 放學講習實施에 대한 審議
7. 26 第19回(夏季) 放學講習
講義場所：東邦速記學院
受講人員：國語速記 212名
英語速記 114名
8. 14 第19回 放學講習修了
修了人員：國語速記 144名
英語速記 44名
8. 18 第70次 理事會
第19回 放學講習結果報告
9. 6 第31次 資格審査委員會
新入會員加入承認
김주성·윤희억·박치명·최길주
9. 10 第71次 理事會
第31次 資格審査委員會結果報告
9. 20 國會速記課에 근무하던 會員 10名 法院으로 轉職
金鍾壽·崔龍夏·梁源龍·金謙善·鄭明吉·高太仲·楊澈在·河大煥·
林來炫·徐吉泉
10. 12 第32次 資格審査委員會
第72次 理事會
第32次 資格審査委員會 結果報告
10. 31 第11回 速記士 資格檢定試驗實施
11. 13 第33次 資格審査委員會
第11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合格者決定
국어 1급：7名 3급：2名 4급：4名 5급：28名 6급：5名 7급：8名
영어 7급：1名 8급：3名
11. 13 第73次 理事會
第11回 資格檢定試驗合格者追認
定款改正審議

編輯後記

- 어느새 낙엽지는 湖落의 가을이 候鳥같이 훌쩍 가버리고 이제 겨울의 문턱 12月이다. 色바랜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며 가만히 76年의 貸借對照表를 쬐하는 마음은 입없이 愁愁롭다. 그러나 아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福된 일인가.
- 올해는 速記界가 法院으로 진출한 획기적인 해이다. 그동안 國會에 10餘年間 請을 바쳐 奉職하다 轉職하는 마음이나 보내는 마음의 아쉬움은 헤아릴 수 없지만 會者定離임에야…… 다만 速記界의 앞날에 큰 성과가 되기를 念願한다.
- 「速記界」 17號가 近 1年만에 나온다. 全 會員의 代辦誌이고 協會의 얼굴인 「速記界」에 적극적인 이해와 參與를 할 때 무한한 生命力으로 이어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번號에 梁先驥가 裁判速記에 대해 玉稿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 貞 —

速 記 界

<第 17 號>

1976年 12月 1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金	允	洙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番地

Tel 7802-2373, 7802-2375

速記業務(案內)

從來의 여러가지 制約으로 수요자 여러분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못했던 속기업무를 금번 본회에서 이를 대폭적으로 개편 단인화함으로써 신속 정확의 원칙아래 다음의 기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속기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1. 各種總會의 速記錄作成
2. 座談會 懇談會 및 세미나
3. 公判速記와 錄音테이프 再生
4. 著述速記 및 其他記錄業務一切

東友速記事務所 (21) 4266

學 院 案 內

☆ 創立 30 週年 !

- ◇ 우리나라 唯一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1. 本 科..... 4 個月
1. 研修科..... 1 年
1. 資 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1. 本 科..... 3 個月
1. 研 修..... 6 個月
1. 資 格..... 高卒以上

修了後

國會, 法院,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社, 留學時的 筆記 및 알바이트 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21) 4266